

-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·운영 -
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안

의안 번호	553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9. 10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 패션디자인산업 육성지원 사무에 신기술을 보급하여 향후 지역패션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패션산업 연구원에 위탁운영 중인 「한국패션산업연구원」의 민간위탁기간(2015. 1. 1. ~ 2019. 12. 31.)이 만료됨에 따라
- 나. 「한국패션산업연구원」은 향후 섬유패션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패션디자인 산업의 개발 및 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연속성, 효율성,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연속해서 민간위탁코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회의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지역패션디자인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(위탁사무 대상)

○ 민간위탁 필요성

- 「한국패션산업연구원」은 “산업기술혁신 촉진법”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2010년 4월에 설립된 시설로서
-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, 정보화지원, 인력양성, 전시기획 등의 사업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패션산업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기술, 신제품연구개발 및 보급
- 패션 및 텍스타일 디자인개발, 정보화 지원
- 시험연구 설비대여 및 의류 시제품 생산지원
-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시마케팅 지원
-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, 창업보육 지원

라. 위탁시설 개요

시 설 명	위 치	시설규모(㎡)		시설용도
		부지	연면적	
한국패션 산업연구원	동구 팔공로 45길 26 (봉무동 1561-4)	2,545	6,459	1층 홍보관, 기업지원센터 2층 사무실, 기업지원센터 3층 사무실, 연구시설 4층 식당, 교육장 대회의실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)

* 최초 위탁일 : 2015. 1. 1.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(2019년 예산기준)

- 운영위탁비 지원 : 400백만원(민간위탁금)

아. 2019년 제2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('19. 08. 23) 심의결과 : 재계약 적정

※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

수탁기관	2019년	비고
한국패션산업연구원	'다등급, 78.38점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붙임 1

나. 민간위탁(재계약) 추진계획 : 붙임 2

다. 민간위탁 협약서(안) : 붙임 3

붙임 1

관련법규

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 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9조의5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 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 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
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재계약“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위탁사무 기준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사무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6조(위탁사무 선정기준)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 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10조(민간위탁 계획)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 및 필요성
2. 범위 및 내용
3. 보조 및 지원예산
4. 추진방법 및 일정
5. 기대효과
6. 그 밖에 참고사항

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.

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
2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
3.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

가. 「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(부정당업자 제재) 사실

나.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, 관 리·감독,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

4. 자치구별 균형분포
5.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
6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

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13조(수탁기관의 선정방법)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(이하 “경쟁방법“이라 한다)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경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, 제2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·서류 등의 제출요구
2. 관계 공무원,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
3.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

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위탁사무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,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.

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18조(위탁계약 체결)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 및 주소
2.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
3.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
4. 수탁기관의 의무
5. 관리·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
6.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
7.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
8.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
9.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
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9조(재계약)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치결과, 제2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붙임 2

민간위탁(재계약) 추진계획

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·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

- 「한국패션산업연구원」의 운영위탁사무가 2019. 12. 31일로 종료됨에 따라,
- 관리·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 수탁기관인 한국패션산업 연구원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

I 추진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19조
- 수탁기관 지정
 - 수탁기관 : 한국패션산업연구원 (일반현황 및 주요성과 ‘붙임1, 2’)
 - 수의계약
 - ①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 5 제1항 2호
 - 업무 성질상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 일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 - ② 「2018년 공유재산 업무편람, 행정안전부」
 -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해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 - ③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 3항
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Ⅱ 위·수탁 재계약 목적 및 필요성

- 사업의 연속성, 효율성, 전문성을 고려,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,
- 향후 섬유패션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패션디자인 산업의 개발 및 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존 위탁기관인 『한국패션산업연구원』 과 재계약하고자 함

※ 위·수탁 협약 연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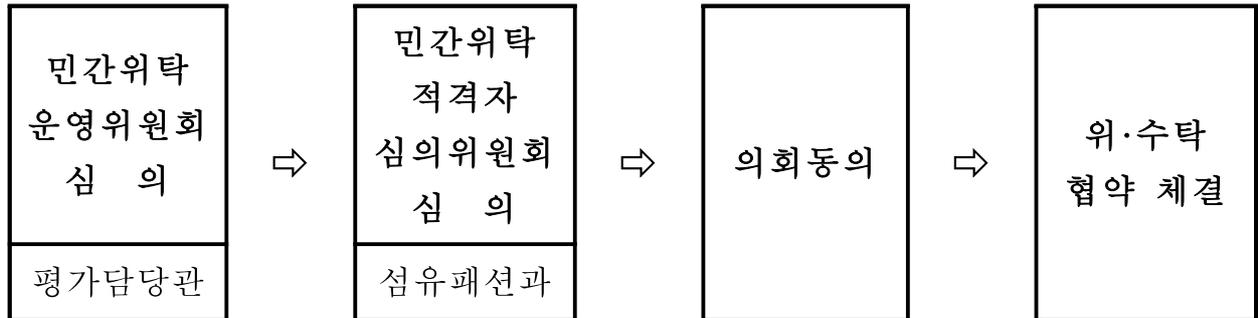
- 2014. 01. 01. ~ 2019. 12. 31. : 「한국패션산업연구원」에 위탁

Ⅲ 위·수탁 재계약 개요

- 수탁기관 : 한국패션산업연구원(동구 팔공로 45길 26)
-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간)
- 위탁사무
 - 패션산업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기술, 신제품연구개발 및 보급
 - 패션 및 텍스타일 디자인개발, 정보화 지원
 - 시험연구 설비대여 및 의류 시제품 생산지원
 - 국내외 판로개척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시마케팅 지원
 -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, 창업보육 지원
- 위탁 운영비 산정
 - 2019년도 예산 편성 : 400백만원

IV 세부 추진계획

□ 재계약 추진절차



□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

- 근거 법규
 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, 제9조
- 심의대상
 -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
- 심의절차 및 일정
 - 심의 신청 : '19년 7월
 - 운영위원회 개최 : '19년 8월 하순
 - 심의 결과 :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
 - * 심의결과 부적정 의결시 민간위탁 추진 불가

□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- 근거 법규
 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14조, 제 15조
-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
 - 위원회 구성 : 위원장을 포함하여 6~9명
 -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호선으로 선정
 -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

- 위촉직위원 : 섬유패션분야 전문가 중 위촉
- 간 사 : 패션의류팀장
- 기 능 :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
- 임 기 : 위촉일부터 심의 완료일까지
- 개최일시 : '19년 9월예정(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후)

□ 의회 동의

○ 근거 법규
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11조

○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일정

- 심의 일시 : '19. 10월 임시회(10. 14 ~ 10. 22)

□ 위·수탁 협약 체결

○ 근거 법규
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, 제19조

○ 주요 내용

- 수탁자의 의무 : 위탁된 사무에 대해 수탁자의 명의로 관계법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.
- 위·수탁 내용 : 패션산업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기술, 신제품연구개발 및 보급 등 5개 사무
- 정산 및 보고 : 수탁자는 당해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총괄 정리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위탁자(대구시)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위·수탁 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)

○ 행정사항

- 협약서 3부 작성 및 날인
- 협약서 공증

V

향후 일정

-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: '19. 08월
-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: '19. 09월
- 의회 동의안 제출 : '19. 10월
- 일상감사 및 협약서 심사 : '19. 11월
- 위·수탁 협약체결 : '19. 12월
- 위·수탁 협약서 공증 : '19. 12월

붙임1 :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일반 현황 1부

붙임2 :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요추진성과

첨 부 자 료

<붙임 1>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일반현황

■ 일반현황

- 소재지 :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45길 26(봉무동 1561-4)
- 설립근거 :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(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및 지원)
- 이사장 : 윤철수 / 원장 : 공 석
- 조직구성 : 1실 2본부 10팀(현원 46명 *계약직원 2명 포함)
- 예산현황('19) : 135억원(시비 34, 특별회계 101)
 - 시비 운영위탁 현황 ('17년 4억원, '18년 4억원)
- 연 혁
 - 2000. 11 : 한국패션센터 설립
 - 2004. 05 : 한국봉제기술연구소 산자부 설립인가
 - 2010. 03 :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통합 명칭변경 승인 (*한국봉제기술연구소+한국패션센터)
 - 2010. 04 :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공식출범 (*초대이사장 김시영, 초대원장 우정구)
 - 2010. 12 : 주 사업장 이전 (*산격동 패션센터 →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內 본원)
 - 2011. 06 : 본원 준공식 개최
 - 2013. 05 : 제 2대 원장 취임 (*김충환 원장)
 - 2014. 04 : 제 2대 이사장 취임 (*박동준 이사장)
 - 2016. 07 : 제 3대 원장 취임 (*백덕현 원장)_2017. 5. 31 사임
 - 2017. 04 : 제 3대 이사장 취임 (*김광배 이사장)
 - 2018. 01 : 의류봉제지원센터 구축
 - 2018. 01 : 제 4대 원장 취임 (*주상호 원장)_2019. 3. 28 사임
 - 2018. 04 : 제 4대 이사장 취임 (*김시영 이사장)_2019. 2. 27 사임
 - 2019. 06 : 제 5대 이사장 취임 (*윤철수 이사장)

■ 주요사업

- 신기술, 신제품 연구개발사업 및 패션정보지원사업 추진
- 시험연구 설비대여 및 시제품생산 지원사업 추진
- 전시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
- 인력양성교육 및 교육훈련, 창업보육 지원사업 추진

<붙임 2>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요추진성과

분 야 별	주 요 성 과	비 고
기회조정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원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관련 세미나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新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패션의류업계 대응 포럼(7/5) - 글로벌 K-콘텐츠 커머스 전략 세미나(4/25) 등 ○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○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: 한중일 섬유산업협력회의(11/4~6) 참가 등 ○ 패션인 특강 3회 개최를 통한 패션 현안에 대한 인식 제고 ○ 오프라인 및 온라인(SNS) 연구원 홍보 진행 	
생산기술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패션봉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도 및 생산성 향상 지원 ○ 최신 봉제기술정보 DB 구축을 통한 기업 생산활동 지원 ○ 의류 봉제업체 근무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○ 보제업체 생태계 활성화(O2O system 일감연계 등) 	
패션정보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신 글로벌 패션정보 조사분석 통해 관련업계 상품개발 위한 콘텐츠 구축 ○ 정기적 패션 정보지 발간으로 지역 섬유패션 업계의 상품기획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	
연구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패션테크 분야 최신정보 공유 및 연구원 미래 신사업 발굴 ○ 산학연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R&D 지원사업 전략 도출 	

붙임 3**민간위탁 협약서(안)****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·운영 위·수탁협약서**

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사무중 일부를 위·수탁함에 있어 위탁자인 대구광역시장을 “계약당사자”이라 하고, 수탁자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장을 “계약상대자”이라 하여 “갑”과 “을”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위·수탁사무) 이 협약에 의한 위·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○ 위·수탁사무

- 가· 패션산업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기술, 신제품연구개발 및 보급
- 나· 패션 및 텍스타일 디자인개발, 정보화 지원
- 다· 시험연구 설비대여 및 의류시제품생산지원
- 라· 국내외 판로개척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전시마케팅 지원
- 마·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지원, 창업보육지원 등

제2조(위·수탁기간) ①이 협약에 의한 위·수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“계약당사자” 또는 “계약상대자”가 위·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.

제3조(협약의 해지) ①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“계약당사자”와 “계약상대자”의 협의에 의한다.

②“계약상대자”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“계약당사자”는 이 협약을 당연 해지할 수 있으며,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1. 법령, 조례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
2. 본 협약에 의한 지시·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
3.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제4조(협약의 변경)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“계약당사자”와 “계약상대자”의 협의에 의하되, 본 협약의 효력을 가진다.

제5조(용어 해석)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“계약당사자”과 “계약상대자”의 협의에 의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해석에 따른다.

제6조(수탁사무의 처리) ①“계약상대자”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이 협약에 의하여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“계약상대자”의 명의로 시행하고 책임을 진다.

제7조(예산의 지원) ①“계약당사자”는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“계약상대자”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.

②제1항의 경비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신청에 의거 “계약당사자”의 승인한 예산에 의한다.

제8조(정산 및 보고) ①“계약상대자”는 “계약당사자”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대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하되, 당해 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총괄 정리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“계약당사자”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.

②“계약상대자”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“계약당사자”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안 승인) “계약상대자”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(안)을 제출하고 “계약당사자”에게 승인받아야 한다.

제10조(지도감독) ①“계약당사자”는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, 서류 또는 그 사무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·처분을 할 수 있다.
②“계약상대자”는 “계약당사자”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, 처분을 수용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)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3조(협약서의 보관)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“계약당사자”와 “계약상대자”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.

2019년 월 일

계약당사자 : 대구광역시장

권 영 진 (직인)

계약상대자 :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

(직인)